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업장으로 한정한다. | <u>지역은 제외한다)-----.</u> |

■ 지특법 시행령 부칙

제3조(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5제1항,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